

교권보호 못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회 개최 힘들고 징계 약해도 재심 요청 방법 없어 교사 보호 구명 순천서 학생이 주먹질 시늬했지만 “교권침해 인정되나 조치 없음” 결론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교사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처분수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교보위 개최 자체가 힘들다는 점에서 교사 보호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이다.

29일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복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도중 자신의 학급 학생 B군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 교보위가 개최됐다.

B군이 뒤 돌아있는 A씨를 향해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등 때리는 시늬를 한 것이다.

다수의 학생이 지켜보고 있던 만큼 A씨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즉시 교장과 교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교보위 개최 의지를 전했다.

교보위는 3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개최됐고 교보위 결과 A씨에게 ‘교권침해는 인정되나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이라는 통보가 전해졌다.

교보위에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관계회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0-4점이 나와 ‘처분없음’이 결정된 것이다. 5-7점은 교내 선도(교내 봉사), 8-10점은 외부기관 연계선도(사회봉사 등), 11-16점은 출석정지나 학급교제, 17-21점은 전학·퇴학 조치가 내려진다.

문제는 피해교사가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해도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A씨도 교보위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A씨는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는 교보위 과정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며 “다른 공무원들은 직장갑질 등에 대해 송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교사는 불복할 방법이 없냐”고 호소했다.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사안 아님’이라고 결론

낼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재판단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처분 대상인 학생·학부모는 징계 수위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한 번 교보위 결론이 나오면 이종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도위원회 등 학생을 지도할 다른 방법도 취할 수 없다.

결국 피해당사자인 교사는 징계처분만 내려지면 이의 제기할 방법이 없다. 교보위 결과를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보위 소집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의 ‘2024 개정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상 교사 보호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이후 21일 이내에 교보위를 소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 교보위 개최까지 21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복잡한 사안일 경우 추가 조사 기간이 필요해 소집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보위 소집까지 3개월이 걸린 A씨의 경우처럼 기간이 오래 소요될 경우 교사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씨는 “처음에는 학교관리자와 교육지원청을 믿었지만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교보위 소집이 이뤄지지 않아 불신이 커지며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결국 지금은 병가를 내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순천교육지원청은 “교보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처받는 선생님들이 많아 화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려다보니 늦어진 면이 있다”며 “악의적으로 교보위 개최를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재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교권국장은 “기대보다 낮은 처분 결과를 받은 교사들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는 생각이 괴로워한다. 징계 수위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며 “또 복잡한 사안이 아닌데도 교보위 소집이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 교사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담당 장학사에 대한 교육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한국시리즈는 끝났지만 암표 거래·사기 수사 계속 광주경찰, 불법 행위 218건 적발

2024 KBO 한국시리즈가 KIA타이거즈 우승으로 끝났지만, 한국시리즈 입장권 ‘암표’ 거래와 사기행각에 대한 경찰수사는 계속된다.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과 관련한 불법 행위 218건을 단속하거나 적발해 수사 중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사기가 214건으로 대부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실제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거래를 했음에도 티켓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고를 한 것이다.

KIA타이거즈가 3·4차전을 승리하면서 사기피해가 더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챔피언십필드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불법 출입’과 ‘암표’ 거래다. 나머지 2건은 온라인 상에서 티켓을 대량 구매·판매하는 행위로 사이버 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한국시리즈가 끝난 시점에서 추가 피해가 접수 될 것으로 전망돼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퇴직 18명 임금피크제 부당 소송 패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감소 등의 불이익이 크더라도 실질적 불이익 발생 여부는 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광주도시공사를 퇴직한 직원 18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8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같은 시기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 지방공기업법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규정됐다. 이에 원고들은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이 보장됐음에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해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정년을 연장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것) 임금피크제에 해당해 다른 유형(고용연장형, 정년연장형)보다 임금감축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봤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상위직급 근로자들이 무보직으로 직급을 유지하거나 전문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직원에 승진기회를 얻게 된 점, 사측이 업무경감 조치를 한 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창업 구직 등 이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삭감 불이익을 상쇄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가을 속으로 건강걷기 | 광주시 동구의 ‘도서관 가는 길, 가을 건강걷기’ 행사가 29일 오후 용산생활체육공원에서 열렸다. 건강걷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체육공원에서 책정원이 있는 분산교까지의 2.7km 구간을 걸으며 가을날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45대 1 아파트’ 가족 등 분양한 시행사 대표 벌금형

45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한 순천의 한 아파트 미계약분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57)씨 등 5명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1군 대기업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와 부사장 등은 2020년 순천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며, 미계약분으로 남은 20세대를 공개 모집을 통해 분양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임의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일반공급 청약률이 45.78대 1에 달

했다. 미계약분 일반 청약 경쟁률도 35~70대 1을 찍었다.

이들은 총 632세대를 분양하면서 95세대가 계약 미체결 물량으로 남게 되자 75세대만 예비 입주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20세대는 정상적인 공고 없이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계약분 아파트를 자신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면서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수단 등을 두루 고려해도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돈 빌려주고 140명 전화번호 받은 대부업체 수사

경찰이 전화번호를 담보로 광주의 한 여대생에게 대출을 해주고 지인들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대부업체(9월 25일 광주일보 6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광주광산경찰은 14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담

보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역 한 대학교에서 대부업체가 A여학생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전화번호 145개를 받아 학생과 학교 강사 등 17명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

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고소장에는 대부업체가 남겨받은 전화번호로 ‘A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학생 등에게 국제발신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 추적 등을 통해 대부업체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문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